

본 신청서는 반환하여드리지 않습니다. 아래 기재내용은 당사의 보증여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판단사항이오니 누락되는 부분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신청세대가 다수일 경우 [첨부2] 목록표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임대보증금보증 신청에 따른 약속서

(법인매입임대사업자용)

본인은 귀 공사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을 ‘보증신청서’ 또는 ‘보증신청 주택현황 [첨부2]’와 같이 신청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업무거래정지,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다 음 -

1. 보증신청일 현재 동·호수별 임대차계약현황(기 보증발급세대는 제외)은 ‘보증신청서’ 또는 ‘보증신청 주택현황[첨부2]’와 같으며, 보증서 발급후 임대차계약세대가 추가 발생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는 임대차계약 변경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귀 공사 보증에 추가 가입하겠습니다.
2.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수납계좌는 ‘보증신청서’ 또는 ‘보증신청 주택현황[첨부2]’의 기재내용과 같으며, 추후 동 계좌로만 수납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임대차계약갱신 또는 추가 임대차계약시에는 동 수납계좌를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귀 공사의 동의를 득하겠습니다.
3. 임대차계약현황, 임대보증금·임대료 수납내역 등 귀 공사가 보증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는 지체없이 제출하겠습니다.
4. 임대차계약체결시에는 계약서에 별첨 ‘보증약관 중 중요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체결하겠습니다.
5. 본 보증신청 관련 첨부자료를 포함하여 본인이 보증신청 또는 귀 공사의 요구 등에 따라 제출하는 각종 서류(기재사항 및 증빙자료 포함)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 보증신청 후 또는 보증이 발급되더라도 보증신청세대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과 같은 추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겠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규 보증가입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동시행령·동시행규칙 및 기타 관계법령과 귀 공사와 체결한 약정내용 및 귀 공사의 내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별첨 : 보증약관 중 중요내용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상 호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 종료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보증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줌
2. 공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이하 “신탁등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분양전환

제2조(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공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5.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6.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7.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8.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필요비·유익비 등의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0.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1.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3.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이후 타주소지 전입신고 등으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공사가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
15.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제3자로부터의 압류·가압류, 전부·추심명령 등으로 인해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6. 보증채권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 등에 따른 배당요구, 채권신고 등 그 밖에 필요한 방법으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 또는 보전하지 않아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17.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제3조(보증채권자의 협력의무 등)

- ① 보증채권자는 공사의 사전동의 없이 주채무자 등으로부터 해당권 설정 등의 요청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②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③ 보증채권자는 공사에 신탁등기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사고 발생 이후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 ④ 보증채권자는 주채무자의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의 사실을 통지받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공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⑤ 보증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사는 그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특이사항 신고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제20조의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상이한 내용 또는 특약사항 기타 신고가 필요한 특이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2]

보증신청 주택현황

[기준일 : . .]

☐ 물건지 소재지 :

※ 물건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물건지 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